

賢良科『薦科榜目』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eon-gwa bangmok* of the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장 원 연 (Jang, won-ye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무과방목 |
| 2. 현량과의 시행 | 6. 맺음말 |
| 3. 「천과방목」의 간행과 내용 | <참고문헌> |
| 4. 문과방목 | |

<초 록>

현량과는 1519년에 조광조의 건의로 시행된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의 하나였으며, 이때의 합격자를 기록한 책이 「천과방목」이다.

「천과방목」은 조선시대 두 번 간행되었는데, 초간은 1579년 노수신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인본은 전하지 않는다. 1639년에 김육이 청주에서 간행한 재간본은 연세대에 낙장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 「천과방목」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일부만 남아 있어 현량과 연구에 많이 인용되지 않았다.

최근 재간본 인출에 사용된 목판 8장이 청주에서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천과방목」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완전한 모습의 「천과방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량과의 시행과정과 「천과방목」의 독특한 기록방식을 살펴보았다.

要語: 賢良科, 薦科榜目, 趙光祖, 盧守愼, 金堉, 燃藜室記述, 己卯錄補遺, 雜同散異

<ABSTRACT>

The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was one of the government service examination systems of Joseondynasty in which outstanding individuals were recruited based on recommendations. It was implemented in 1519 at the recommendation of Jo Gwnag-jo, and those who qualified were recorded in *Cheon-gwa bangmok*.

Cheon-gwa bangmok was published twi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irst printed copy was produced by Noh Su-sin, but it is unfortunately not extant. A reprint was published in 1639 in Cheongju by Kim Yuk, but the extant copy currently at Yonsei University is defective. This *Cheon-gwa bangmok* is not cited much by researchers of the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because it is not well known and only parts of it remain.

It became possible to ascertain a more complete version of *Cheon-gwa bangmok* by supplementing missing its parts when eight woodblocks that were used in reprint were found recently in Cheongju. Based on tha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and the unique recording method of *Cheon-gwa bangmok*.

Key words: Examination for the Learned and Virtuous, *Cheon-gwa bangmok*, Jo Gwang-jo, Noh Su-sin, Kim Yuk, *Yeollyeosil gisul*, *Gimyorokboyu*, *Japdong sani*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jwy4075@korea.kr)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5일
서지학연구, 제80집, 337-359,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337>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대(958)에 도입되어,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천년 이상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인 관료의 임용방법이었다. 조선 중종 14년(1519)에 시행된 현량과는 과거제 시행 후 5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된 관료 등용방법의 개혁조치였다. 현량과는 초시와 복시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으로 대신하고, 전시에서는 순위가 아닌 추천된 자들에게 對策을 策問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시대에 천거제로 관리를 선발한 것은 현량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때의 합격자를 기록한 방목 또한 기존의 방목과 구분하여 ‘薦科榜目’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천과방목』 인쇄본은 연세대학교 소장의 『正德己卯四月薦舉別試文武科榜目』(이하 ‘薦科榜目’으로 약칭함¹⁾)이 유일하며, 그나마도 武科榜은 없었고 文科榜 일부만 남아 있어 『천과방목』의 완전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행히 최근 청주에서 『천과방목』을 인쇄하였던 목판 8판이 발견되어, 좀 더 완전한 모습에 가까운 방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량과 시행의 전말에 대해서는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己卯錄補遺』, 『國朝榜目』, 『雜同散異』를 비롯한 비교적 많은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다. 18세기 후반 李肯翊이 지은 『연려실기술』 권8 ‘賢良科罷復’에는 현량과의 시행과 합격자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만, 『천과방목』 원문과 비교하면 생략된 내용이 많으며, 무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묘록보유』는 안瑬가 기묘사화 때 禍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는데, 현량과의 시행과 破科 과정을 기록하고, 현량과 급제자 28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국조방목』은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일종의 종합방목이다. 여기에는 현량과 문과급제자 28명의 급제시의 신분과 薦目, 본관, 아버지를 기록하였는데, 『천과방목』의 내용과 비교하면 요약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安龍福이 편찬한 『雜同散異』에는 현량과 무과급제자 46명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은 현량과의 시행 전말과 합격자들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수록된 문헌들인데, 『천과방목』과 실록 등의 문헌에서 발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연려실기술』과 『기묘록보유』는 내용이 보다 상세하여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한 문헌이다.

현량과는 16세기 조광조와 기묘사화, 훈구파와 사림파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림의 세력 확대를 위해 시행된 과거제도였기 때문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병휴는 현량과 시행의 정치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현량과 급제자의 가계, 교육, 출신 등의 性分을 분석하여,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의 성분을 지닌 인물들이 등용되었는지를 밝혔으며,

1) ‘薦科榜目’은 『正德己卯四月薦舉別試文武科榜目』의 판심제이다.

또 급제자들의 천목을 분석하여 平價要目을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 지조, 생활태도 등 7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물을 분석하였다.²⁾ 이외 양윤석³⁾, 정두희⁴⁾ 등도 현량과 시행의 역사적 의의와 인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 연구들이 『천과방목』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천과방목』의 완전한 모습을 확인하는데 1차 목적이 있고, 아울러 『천과방목』을 중심으로 현량과의 시행과 파복 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천과방목』의 독특한 구성방식을 일반 방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현량과의 시행

조광조(1482~1519)는 성리학의 유교적 이상 정치를 꿈꾼 정치개혁가였다. 그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길은 군자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정치를 맡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인재등용 방식이었던 과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조광조의 정치개혁의 신념은 1519년 현량과 시행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현량과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이 천거제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던 새로운 科擧의 한 방식이다. 현량과의 실시 주장은 당시 과거가 재주나 경서를 암송하는 정도로 평가할 뿐이고, 사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 修己, 즉 자기 수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인재가 조정에 들어오면서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학문적 소양 외에도 덕을 쌓은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광조는 덕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한 후 그 가운데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518년 2월 조광조는 기존 과거제도의 폐단을 비판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또 출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현량과의 설치가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⁵⁾ 이 같은 조광조의 주장은 같은 해 3월 경연에서 천거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발 방식은 지방 수령과 홍문관, 육경, 대간의 추천을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對策으로 시험하자는 것이었다. 또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은 과거급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과거제를 혁신하여 천거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고위 관료로부터 인사행정을 맡은 모든 책임 있는 관료들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평소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찬성하던 사람들

2) 李秉休, “賢良科 及第者의 性分,” 『대구사학』 13집(1997), 195-222.

3) 梁允錫, “朝鮮中期 賢良科 研究,”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1996.12).

4) 鄭杜熙, “趙光祖의 復權科擧과 賢良科 問題,” 『韓國思想史學』 16집(2001), 3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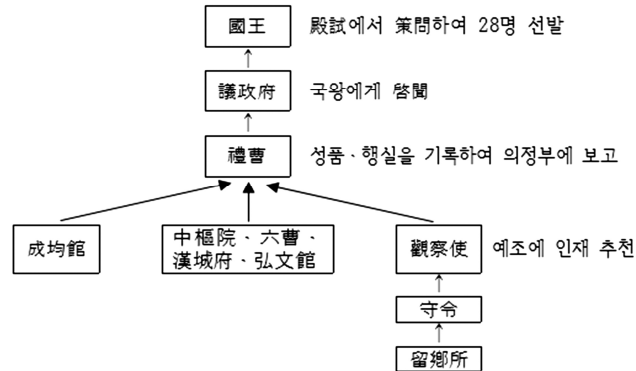
5) 『朝鮮王朝實錄』 中宗13年 2月 24日, “上下苟能求賢如渴 則豈無遺逸之人 雖未出身之人 必有合於侍從者矣 國家用人 大概以出身爲重 然有大賢者 則何必拘於科擧哉.”

도 상당수 반대하였다. 정광필은 재주와 덕행이 있는 인재가 천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책으로 시험할 때에도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지 못하거나 보다 못한 사람이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⁶⁾ 남곤은 천거제가 성공하려면 천거하는 사람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였다.⁷⁾ 심지어 현량과 시행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신용개 등도 글재주를 보는 것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우려하기도 하였다.⁸⁾ 이에 조광조는 고위 관료들의 거센 반발로 한 발 물러나, 천거제를 시행하되 기존의 과거제도를 보완하는 別試로 운용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신용개, 안당, 유담년 등은 천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천거방법과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하여,⁹⁾ 중종 13년 6월 드디어 왕명으로 의정부와 예조가 천거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에서는 四館이 이를 專掌하여 유생과 朝仕를 막론하고 성균관에 薦報하게 하고, 성균관에서는 다시 禮曹에 轉報한다. 中樞府와 六曹, 漢城府, 弘文館에서도 아는 인재를 천거하여 예조에 移文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유향소가 본읍 수령에게 추천하고, 본읍 수령은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며, 관찰사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예조에 移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예조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천거한 인재를 모두 취합해서 그 성품과 행실을 적어 의정부에 보고하고 계문한 뒤에 殿庭에서 친히 책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즉 인재의 천거는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하도록 하였고, 천거는 ① 사관·성균관 → 예조, ② 중추원·육조·한성부·홍문관 → 예조, ③ 유향소 → 수령 → 관찰사 → 예조 등 3가지로 경로로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6) 『朝鮮王朝實錄』中宗13年 3月 12日. “領議政鄭光弼議 才行可用之人 自上欲得而用之之意 臣已知之矣 今薦舉策取事 有才行可用之人 則雖非出身 猶有薦用之路 出身之人亦有登進之路 今若爲此事 則其初薦舉之際 才行卓異者 或有遺失之弊 及其策取之時 卓異者或不中 而其未卓異者或反居上列.”
- 7) 『朝鮮王朝實錄』中宗13年 3月 22日. “今若薦舉而試策於大庭 則與古之賢良 方正之科近似 而然不得已令外方皆薦 則必致猥濫 若人所共薦之人則至少 且并罪其謬舉者 此亦難矣 科舉之法 非徒我國如此 自隋以下皆然 雖以科舉取人 爲善之人 當自盡道 鄉舉 里選之法 雖欲復行於今日 其舉人者安能如三代之人乎 薦舉取人 雖一爲之 不可常行.”
- 8) 『朝鮮王朝實錄』中宗13年 3月 11日. “領事申用漑曰 不可以詞章取人也 審矣 然我國事大之際 多用詞章 詞華亦不可專廢也 不特經學之人爲可用也 雖才華之人 亦可入於館中 不害爲義理之學也 大抵今也 侍從臺諫多闕 此由文臣喜爲守令之故也 有親在京師 而亦求外任者.”
- 9) 『朝鮮王朝實錄』中宗13年 3月 12日. “左議政申用漑 右贊成安瑒 左參贊柳聃年議 此薦舉策取之事 如古之賢良方正孝廉之科 爲之當矣 但薦舉之際 若不精審 如常時科舉之例 人爭欲赴 以如此之人 或被薦而得赴 則反不如常時之科舉矣 然則莫如不爲 若欲爲之 其薦之之規模 節目 反覆精詳 何如 若如是則其中者 盡是才行可用之人 非常時科舉僥倖得中者之比矣.”
- 10) 『朝鮮王朝實錄』中宗13年 6月 5日. “京中則四館專掌 勿論儒生 朝士 薦報成均館 成均館轉報禮曹 中樞府 六曹 漢城府 弘文館 亦舉所知 移文禮曹 外方則留鄉所報本邑守令 守令報觀察使 觀察使更加詳察 移文禮曹 合取京外所薦 開具姓名 行實 報議政府 啓聞後 殿庭親策事.”



<그림 1> 현량과 인재 천거와 시행 절차

이렇게 조광조는 논쟁을 통해 현량과 실시의 제도 마련에 성공하였다. 무인년(1518) 가을 중종은 중앙과 지방에 才藝와 德行을 겸비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명하여 120명을 선발하였다. 120명에 대하여는 합격자 28명 외에도 78명이 『大東野乘』 己卯錄續集에 이름과 본관 그리고 薦目에 해당하는 천거된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¹¹⁾ 이 기록에는 70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밝혀 두었다.¹²⁾ 문과 급제자 28명 또한 당시 서울에 거주한 사람이 21명이었던 것을 보면,¹³⁾ 추천된 120명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묘년(1519) 4월 19일 殿庭에서 對策을 科試하여 김식을 비롯한 2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¹⁴⁾ 현량과의 실시는 기성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관료 28인이 선발되었다. 현량과의 설치로 신진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대량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조광조 등은 이 현량과를 통해 신진세력들을 대량으로 관계에 진출시킬 수 있었다.¹⁵⁾ 그러나 현량과는 시행 후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결국 자신의 지지 세력을 등용하려는 것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조광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현량과 시행 후 몇 달이 되지 않은 그해 12월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숙청되고 현량과도 함께 파과 되고 말았다.

11) 『己卯錄續集』 <別科時薦舉人>, 京外所薦摠一百二十人 登薦科二十八人 別有傳十四人 餘七十八人 懼其善行 泯滅 而並錄之(이하 78인 명단).

12) 『大東野乘』 <己卯錄續集>에 78명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9번째 인물인 佐郎 鄭瓊의 소개 끝에 ‘已下皆京居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13) 『己卯薦科榜目』 무과방

14) 『朝鮮王朝實錄』 中宗14年 4月 13日. “上御勤政殿 策薦舉士 取掌令金湜等二十八人 幸慕華館 試武人 取鄭麟等四十六人.”

15) 『朝鮮王朝實錄』 中宗14年 4月 17日.

3. 「천과방목」의 간행과 내용

3.1 「천과방목」의 간행

현량과는 1519년 12월의 기묘사화로 파과된 후 몇 차례의 복과와 파과를 반복하다가 선조 1년(1568)에 이르러 최종 복과되었고, 방목의 간행은 현량과 시행 후 50년이 지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방목의 간행은 현량과 丙科 2등으로 합격하였던 安處謙의 아들 安璐가 일을 주관하고, 병과 1등으로 합격한 李延慶의 외손 沈喜壽와 金穎男이 의논하여 외손에게 비용을 얻어 기록하였다. 당시의 傳旨 등을 찾아서 책머리에 신고, 先諱와 薦目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벼슬을 지낸 경력과 자손을 기재하였다. 방목에는 문과와 무과를 함께 수록하여 이연경의 사위 盧守愼의 발문을 붙여 1579년에 간행하였다.¹⁶⁾

과거 합격자를 기록한 방목은 국가 또는 함께 합격한 同榜들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합격자의 후손들이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천과방목」의 경우는 합격자의 후손들이 간행하여 나누어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부를 인쇄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수량은 아닌 듯하며, 그나마도 임란을 거치며 판목을 비롯한 간행본도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60년 후에 중간되는 「천과방목」의 金堉 발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육(1580~1658)은 노수신이 간행하였던 「천과방목」 1권을 임란이 끝난 후까지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인조 14년(1636)에 김육은 임금의 명을 받아 중국에 조회하러 가게 되어 그 책을 집에 두고 갔는데, 그해 겨울 병자년의 난으로 강화도에서 책을 잃어버렸고, 이후로 다시는 그 책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김육은 인조 16년(1638) 가을에 湖西의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어 청주에 이르렀을 때 江叟 朴薰의 증손 朴安時가 베껴 쓴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서신을 보내 인쇄해서 榜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여, 이듬해 정월에 간행을 마쳤다고 하였다.¹⁷⁾ 김육은 현량과 갑과 1등을 차지한 金湜의 4대손으로, 호서지방의 관찰사로 부임하여 「천과방목」을 다시 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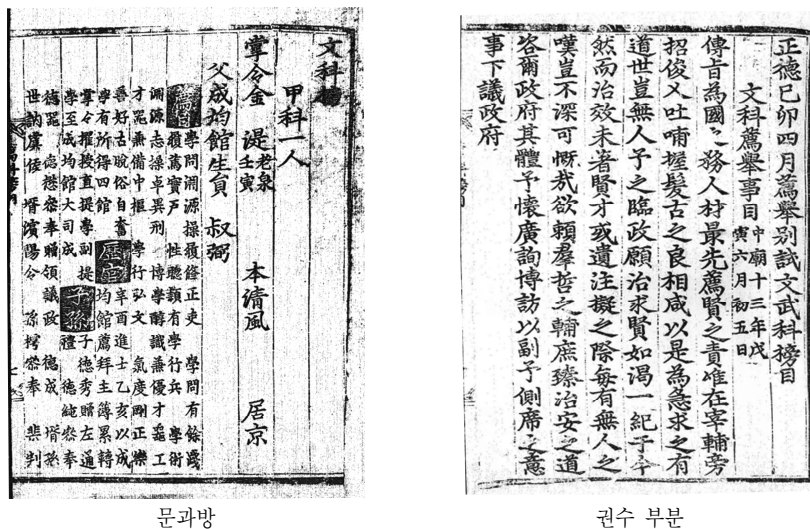
1579년 노수신이 간행하였던 「천과방목」은 전하지 않고, 1639년 김육이 호서관찰사로 있을 때 청주에서 다시 간행한 판본과 판목 일부가 전하고 있다. 판목은 강수의 직계 후손으로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박씨 박상일 선생이 8판을 소장하고 있고, 인쇄본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낙장으로 12장이 1책으로 묶여 소장되어 있다. 원래 「천과방목」에는 문과방과 무과방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연세대 소장본에는 무과방은 없고, 문과방 11장과 노수신의 발문 끝부분 한 장만 남은 상태이다.

16) 「蘇齋先生文集」 권7, 跋.

17) 「潛谷遺稿」 권9, 跋.

3.1.1 연세대 소장 「천과방목」

연세대학교 소장 「천과방목」은 박상일 소장의 「천과방목」 목판 인출지¹⁸⁾와 비교하면, 판식과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여 이 목판에서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판본과 목판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판본에서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1579년 노수신의 발문만 남아 있고, 목판에도 발문이나 간행기록이 없기 때문에 노수신의 발문을 근거로 157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1639년에 「천과방목」을 중간하면서 작성한 김육의 발문과 목판의 현 소장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추정하면 두 자료는 1639년 김육이 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김육은 당시에 이미 인본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청주에 사는 강수의 증손이 가지고 있던 사본으로 청주에서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때에 노수신이 간행하였던 인본이나 목판이 있었다면 굳이 사본의 소장자와 간행을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판목과 연세대본의 판식이 완전히 일치하고, 특히 김육의 간행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강수의 후손이 판목을 현재까지 보관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1639년에 김육이 청주에서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 연세대 소장 「천과방목」

연세대 소장의 「천과방목」에는 무과는 빠지고 문과 급제자만 남아 있다. 개장된 표지는 6침안의 선장형태이며, 표지에는 굵은 펜으로 “司馬榜目正德己卯四月薦舉別試文武科榜目”이라 썼다. 책의 크기는 세로 29.9cm, 가로 20.6cm, 반광은 세로 21.9cm, 가로16.4cm, 사주쌍변에 9행 19자, 3엽내향화문 백어미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판심제는 ‘薦科榜目’이다. 제1~11장과 제26장의 총 12장만 남아

18) 목판의 소장자가 직접 인출하였다고 한다.

있다. 이 중 제26장은 노수신의 발문 끝부분에 해당한다. 연세대본이 무과를 빼고 문과만 남겨져 개장된 것은 현량과가 주로 문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점과 일반적으로 무과보다 문과를 중시한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과방 역시 제12~15장이 누락되었고, 노수신 발문의 끝부분 일부만 남아 있는 것 등은 훼손에 의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본문의 인쇄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무과방목이 결락되기는 하였으나 판본으로 전하는 『천과방목』은 본 자료가 유일하여, 자료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현량과 급제자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3.1.2 개인소장 「천과방목」 목판

1639년에 김육이 간행한 「천과방목」의 목판은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江叟 朴薰의 직계후손인 박상일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 이 목판은 김육의 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주에 사는 강수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사본으로 1639년에 간행한 「천과방목」의 목판이다.

박상일 선생은 밀양박씨 직계후손으로 이 목판 외에도 1666년에 간행된 「눌재강수유고」 목판 31장¹⁹⁾도 소장해 오다가 최근 청주고인쇄박물관에 기탁한 바 있다. 「눌재강수유고」 목판은 1666년에 눌재 朴增榮(1464~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의 시문집을 만들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천과방목」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 「눌재강수유고」 또한 「천과방목」과 마찬가지로 청주의 관에서 제작하여 인출하였으며, 그 목판은 후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 「천과방목」의 목판은 기묘년 현량과에 급제하였던 강수 박훈의 후손들이 김육의 요청으로 간행을 주도하였고, 그 목판은 후손들이 관리하여 현재까지 일부가 전해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박상일 소장 「천과방목」 목판

목판은 8판이 남아 있는데 인쇄 張數로는 열여섯 장에 해당한다. 제1~2장은 없고, 제2~5장은 傳旨과 罷復科에 관한 기록, 제6장은 試官, 제8~15장은 문과급제자, 제16~24장은 무과급제자를

19)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새겨놓은 판이다. 대체로 목판의 마구리 부분에는 판리를 위해 장차를 표시하였지만 이 목판에는 그런 표기는 하지 않았다. 최근에 견출지에 번호를 써서 마구리에 붙여 두었고, 판목 옆 부분에도 별도로 제목과 장차를 써서 붙여 두었다.

목판에서는 음각된 각수명도 확인되는데, 제4장에 ‘金刻’, 제12장에는 ‘白’, 제13장 ‘一’과 ‘朴’, 제14장에 ‘一朴’이 음각되어 있다. 이 중 ‘一’과 ‘朴’은 같은 장에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으로 보아 할 듯하다. 이외 김씨 성과 백씨 성을 가진 두 사람 등 刻手 세 사람이 판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金刻’



제12장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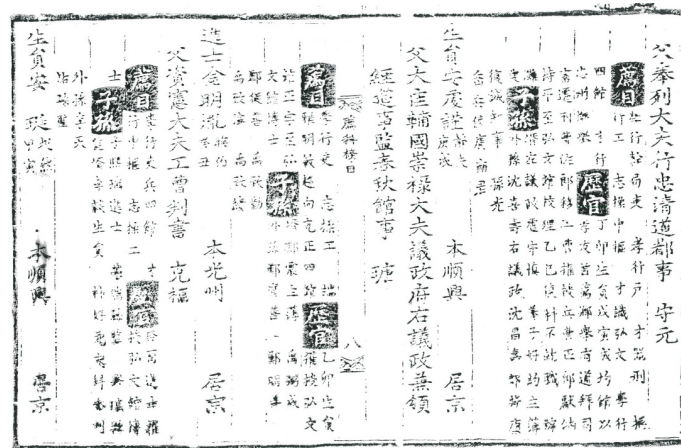
제14장 ‘一朴’



제17장 ‘金’

<그림 4> 「천과방목」의 각수 기록

목판의 전체적인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제5·6장이 새겨진 목판은 우측 가운데 부분이 가로로 약간 금이 가 있고, 제11·12장의 목판은 가로방향으로 끝까지 금이 가 있으며, 금이 간 아래·위·좌·우에도 약간씩 금이 간 상태이다. 글자 상태는 목판이 40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온전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그림 5> 「천과방목」 제8장(인출지)

인출지를 통해 목판의 글자 상태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 5>처럼 글자 획 일부가 끊어져 알 수 없는 글자가 많고, 획이 가늘어져 희미하게 인쇄되었거나 특정부분이 마모되어 글자형태가 일그러진 부분이 자주 보인다. 계선 또한 끊어지거나 인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천목과 역관, 자손 부분은 소자로 기록되어 있어 이 부분의 훼손이 많고 판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다. 그렇지만, 연세대 소장본을 비롯한 다른 문헌의 기록을 참고하면 내용의 복원은 거의 가능한 수준이다. 여덟 장의 판목 규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천과방목」 판목의 규격

판 차	판 크기(cm) (마구리 제외)	판 두께	마구리(길이×넓이×두께)		기타사항
			좌	우	
3·4장	53.5×22.0	2.1	24.7×3.9×5.0	23.6×3.5×4.8	제4장에 “金刻” 음각
5·6장	52.3×22.8	2.0~2.3	23.8×3.8×4.0	24.3×3.8×4.5	
8·9장	53.7×22.9	1.8~2.2	24.2×3.7×4.8	23.0×3.5×4.3	
11·12장	52.0×23.0	1.6~1.8	23.0×4.3×4.9	24.2×3.3×5.0	가로 방향으로 금이 감 제12장에 각수 “白” 음각
13·14장	53.0×22.6	1.7/1.8	27.0×4.5×6.0	24.0×4.3×4.3	판목 2개를 겹쳐 사용 각수 “一朴” 음각
15·16장	56.8×22.3	2.0	24.1×5.0×6.0	23.5×4.5×4.5	
17·18장	52.4×22.5	2~2.2	25.4×3.7×4.4	25.2×3.8×5.5	제17장에 각수 “金” 음각
23·24장	55.3×22.5	1.9	24.8×3.5×5.0	25.4×4×4.8	면 보각(흠만 파임), 깊이1~1.2cm

3.2 「천과방목」의 내용

현량과의 시행과정과 罷復 등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기묘보유록」 등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천과방목」의 수록 범위와 기술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한 상태의 「천과방목」이 전하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발견된 여덟 장의 「천과방목」 목판은 판본에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여서, 두 자료를 통해 보다 완전한 모습의 「천과방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온전한 형태의 「천과방목」은 총 26장 또는 27장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5장은 현량과 시행 과정의 傳旨와 罷復科의 과정을 수록하였으며, 제6장은 현량과의 문과 시험 감독관, 7~15장은 문과급제자, 16장은 무과시험 감독관, 16~24장은 무과급제자, 25~26장은 노수신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1579년 김육의 발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수록되었다면 26~27장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천과방목」의 구성을 장별로 재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천과방목」의 내용 구성

장 차	목 차	내 용	전존현황(장차)	
			인본	목판
제1장	文科薦舉事日	(1518.6.5.) 정사의 급선무는 어진인재의 등용에 있으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중종의 傳旨	1	1
	議政府禮曹同議 啓目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천거의 방식과 절차를 기록한 계목		
제2장	武科初試規矩兵曹啓目	병조에서 무과 초시의 합격자 선발방식을 기록한 계목	2	2
	己卯四月初十日 展試 中廟十四年	(1519.4.10.) 왕이 근정전에서 경외에서 천거된 120명에게 策問題를 출제하고, 또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시행하여 정린 등 46인을 선발		
제3장	四月十四日	(1519.4.14.) 김식 등 28명을 뽑아 문과급제자로 방을 냄	3	3
	四月十五日	(1519.4.15.) 급제자 모두 賢士이며, 김식이 1등을 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니, 독권관들로 하여금 왕의 뜻을 전하게 함		
제4장	四月二十日 唱榜	(1519.4.20.) 흥폐와 어사화를 하사하고, 가뭄으로 거리 행차는 정지시킨	4	4
	十二月十六日 罷薦科	(1519.12.16.) 薦科를 罷榜 기록		
	嘉靖乙巳六月二十九日 復薦科	(1545.6.29.) 復科 기록		
제5장	十月初十日 還罷科	(1546.10.10.) 罷科 기록	5	5
	隆慶戊辰十月初十日 復科	(1546.10.10.) 復科 기록		
제6장	文科試官	讀券官 申用漑 등 문과 시관 기록	6	6
제7~15장	文科榜	掌令 金湜 등 28명의 문과 급제자 기록	7~11	8~9, 11~15
제16장	武科試官	參試官 李長坤 등 무과 시관 기록		16~18, 23~24
제16~24장	武科榜	鄭璘 등 46명의 무과 급제자 기록		
제25~26장	盧守愼 跋文	1579년 盧守愼의 발문	26	
제26~27장	金堉 跋文	1639년 金堉의 발문(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		

「천과방목」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량과의 시행과 罷復科 과정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중종 13년(1518) 6월 5일 왕은 정사의 급선무는 어진 인재를 구하는 것이라는 뜻을 의정부에 전하고 이에 부응하라는 내용의 傳旨을 내렸다.²⁰⁾ 이에 따라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논의하여 구체적인 천거의 절차를 마련하였고,²¹⁾ 이때 병조에서도 무과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계목을 마련하였다.²²⁾

20) 「己卯薦科榜目」 <文科薦舉事日>. “傳旨 爲國之務 人才最先 薦賢之責 唯在宰輔 旁招俊乂 吐哺握髮 古之良相 咸以是爲急 求之有道 世豈無人 予之臨政願治 求賢如渴 一紀于今 然而治效未著 賢才或遺 注擬之際 每有乏人之嘆 豈不深可慨哉 欲賴群哲之輔 庶臻治安之道 咨爾政府 其体予懷 廣詢博訪 以副予側席之意事 下議政府.”

21) 「己卯薦科榜目」 <議政府禮曹同議啓目>. “歷代取材之法 規制各異 難以徧舉 惟西漢孝廉賢良等科 最爲近古 又其選舉之方 考諸史冊可見 元朔五年 詔郡國縣官 有好文學敬長上 肅政教順鄉里 出入不悖 所聞令相長丞上屬所二千石謹察 御史司隸州牧歲舉茂材四行各一人 四行謂醇厚質樸謙遜節儉也 郡國茂材 偕計到京師 天子臨軒親策云云 選取節目 詳悉備具 今依倣此才行兼備可用之人 令京外審覈名實廣薦 京中則四館專掌 勿論儒生朝士 薦成均館 轉報禮曹 中樞府六曹漢城府弘文館 亦舉所知 移文禮曹 外方則留鄉所報本邑守令 守令報監司 監司更謹察 移文禮曹 合取京外所薦聞 具姓名行實 報政院啓聞 殿策執事 臨時啓稟 間有名實戾謬舉之弊 亦爲可慮 舉主姓名並錄 以憑後考何如 啓依允.”

22) 「己卯薦科榜目」 <武科初試規矩兵曹啓目>. “命官分二所 步射木箭一矢 鐵箭六兩二矢 退三十步 騎射一次四中以上 各取五十人.”

기묘년(1519) 4월 10일 왕은 근정전에 행차하여 책문 제목을 명하였는데, 이때 서울과 지방에서 천거된 인물이 120명이었다.²³⁾ 출제된 策問은 ‘왕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국정을 운영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그 공적이 드러나지 않고, 인심은 경박해지고 민생은 나날이 곤궁해지기만 하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백성이 편안해지고 산물이 풍족해지며 풍속이 아름답게 변하여 唐·虞 시대의 다스림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내용이었다.²⁴⁾ 이날 文科試官은 議政府左議政 申用溉와 司憲府大司憲 金淨이 讀卷官 맡았고, 對讀官은 吏曹參議 申光漢, 承政院左承旨 孔瑞麟, 成均館司成 鄭順朋, 議政府舍人 閔壽千, 弘文館校理 奇遵 등 5명이 맡았다. 무과는 參試官으로 議政府左贊成 李長坤, 兵曹判書 高荊山, 漢城府左尹 崔漢洪 3명이 맡았으며, 參考官으로는 司贍寺正 潘碩樞, 訓練院正 朴迪孫, 司宰監僉正 蔡世傑 3명이 맡았다.²⁵⁾ 殿試를 치른 후 같은 달 14일에 독권관 신용개 등이 시권에 등급을 매겨 장령 김식 등 28명을 선발하여 入啓하였는데, 왕은 특히 김식이 장원이 된 것을 기뻐하였다.²⁶⁾ 다음날 승정원에 독권관을 시켜 왕의 뜻을 전하게 하였고,²⁷⁾ 4월 20일 唱榜하도록 하고, 홍패와 어사화를 하사하였으며, 가뭄 때문에 거리 행차는 하지 않도록 하였다. 문과 金明胤과 무과 柳敬宗이 齋會를 행하였고, 합격자 중 弘文錄²⁸⁾은 18명이었다.²⁹⁾

그해 12월 靖難功臣 僞勳削除로 촉발된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현량과 역시 파방되었다. 조광조가 시행한 현량과는 조종의 제도가 아니고, 당초 천거할 때에도 공평하지 못한 폐단이 있었으며, 시취하던 날에도 사사로운 정에 치우친 일이 있었다고 하며, 천거과에서 문과를 파방하고 무과는 그대로 두라는 내용의 전지를 의정부에 내렸다.³⁰⁾ 그러나 1545년 인종이 즉위하여 조광조의 관작을 회복하여 주고, 현량과에 합격한 자의 자격을 다시 돌려주며, 현량과를 회복하라는 傳旨을 이조에 내렸다.³¹⁾ 1546년 명종이 즉위하자 우상 李芑 등이 다시 과하기를 청하여 대신들에게 논의하도록 하였는데, 영의정 尹仁鏡의 적극적인 파과 주장에 따라 현량과를

23) 『己卯薦科榜目』〈己卯四月初十日 展試〉. “上御勤政殿 命題策問 京外所薦一百二十人.”

24) 『己卯薦科榜目』〈策問題〉. “王若曰 予以寡昧 承祖宗艱大之業 夙夜孜孜 惟不克負荷是懼 上下同心 期臻唐虞之治 于今十有四載矣 治效未著 人心漸至澆漓 民生日就困窮 予竊痛甚 究其所由 必有其致 可得明言其效歟 伊欲民安物阜 風俗於變 復唐虞之治 其道何由 帝王之道 不墜於地 在人子大夫 必有識其大者 其各悉著所蘊 予將覽焉.”

25) 『己卯薦科榜目』武科榜目.

26) 『己卯薦科榜目』〈四月十四日〉. “讀卷官等 將金湜等策課次試卷入啓 傳曰 古詩云 濟濟多士 文王以寧 今宜廣取賢才 布列朝廷可也 且金湜賢者 要得此人將爲師儒之官 而恐或不與其取也 今居壯元之列 予別有所喜焉 讀卷官取掌令金湜等二十八人 爲文科出榜 乃啓曰 非徒湜也 有名之士多與焉 臣等亦甚喜焉.”

27) 『己卯薦科榜目』〈四月十五日〉. “傳于政院曰 今所取之人 固皆賢士 予之尤喜者 金湜爲首也 昨日讀卷官等有所啓意 而予未及答之 今乃言之 政院知悉 將使讀卷官聞之可也.”

28) 홍문관 관원의 후보자로 간선하는 일.

29) 『己卯薦科榜目』〈四月二十日唱榜〉. “賜紅牌及花以旱 命停遊街 文科金明胤武科柳敬宗行齋會[]弘文錄十八人.”

30) 『己卯薦科榜目』〈十二月十六日罷薦科〉. “傳旨 惟我祖宗朝 取士之路 不爲不廣 而其取士法 自有定規 日者言者以爲 欲得明體適用之才 宜倣古賢良孝廉等科 令中外廣薦才行兼備德器成就者 別設一科 庶可盡得實用以輔予治 而期修職業矣 及今臺諫大臣皆曰 薦舉科非祖宗之制 而當初薦舉之時 頗有不公之弊 策取之日 亦有偏私其於國家設科之意 較其名實 則大相此謬 薦舉文科則罷榜 武科仍舊勿罷事 下議政府.”

31) 『己卯薦科榜目』〈嘉靖乙巳(1545)六月二十九日復薦科 仁廟元年〉. “傳旨 趙光祖復職事 賢良科還給事 欲從容爲之 今者予病至此 不可不爲趙光祖職牒還給 賢良科復科 並依施行下吏曹.”

과하도록 명하고, 그 중에 쓸 만한 사람은 그대로 임용하도록 하였다.³²⁾

선조 1년(1568) 10월 10일 선조는 “기묘년 천거과는 殿前에서 과거를 보여 뽑아 名議가 매우 중하였는데, 못 소인들이 목은 원한을 풀고자 과거가 공평하지 못했다고 지목하여 과과하였다. 그러나 간사한 실정을 덮기 어렵고 공평된 논의가 저절로 격화되어 인묘 말년에 그 과거를 특별히 회복하도록 명하였던 것인데, 을사년 간신이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또 간사한 의론을 세워 혁파하게 하였으므로 사림이 오래 분함을 품었었다. 이제 남곤의 관작을 삭탈하여서 그 흥특함과 착한 사람을 해친 죄를 바르게 했다. 옳고 그름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 과거를 아직도 회복하지 않은 것은 극히 온당하지 못하니 과거를 회복하라.”고 하여 다시 복과 되었다.³³⁾

이상은 「천과방목」 앞부분에 기록된 현량과의 시행과 과복과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과거시행 과정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특별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55년 세조의 즉위를 도와 공신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한 훈구파와 지방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의리와 명리, 절개를 중시하며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던 사림파의 대립은 정치개혁가 조광조의 현량과 시행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충돌하게 되었다. 중종 14년(1519) 4월 10일 현량과가 시행되면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가 승리하는 듯하였으나, 그해 12월 기묘사화로 조광조 등이 훈구세력에 의해 제거되면서 현량과 또한 과과되고 말았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하여 1519년에 과과되었던 것을 처음으로 복과하였으나 이듬해 명종이 즉위하여 다시 과과하고 말았다. 현량과는 이렇게 과과와 복과를 반복하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최종 복과되어 더 이상 과과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사림파의 정계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사림파가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과방목」의 간행은 단순한 급제자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승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한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문과방목

현량과는 詞章에만 치우치지 않고 덕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기존의 과거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천거되는 인물의 인품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

32) 「己卯薦科榜目」 <十月初十日還罷科 明廟即位文定王后垂簾時>. “右相李芑啓曰 己卯之人 徒以自己所知爲賢良 此甚不正之科 不可用也 中廟所罷 仁廟雖命復之 亦不可用 請還罷其科 命議于大臣 領議政尹仁鏡啓曰 柳仁淑等常時有言 賢良科可速啓復之 臣以謂 中廟所罷 雖或啓之 主上即位未踰年 必不復立 升遐後 遽有復科之命 人心或有未便 或有疑之 其後又有兇徒之供 臣嘗與李芑議及於此 不能無疑 罷之允當 傳曰 賢良科如啓罷之 其中可用者仍用事 下吏曹 是科時誣陷尹任柳灌柳仁淑等命復且以尹任爲欲收人心矯請還罷.”

33) 「己卯薦科榜目」 <慶戊辰(1568)十月初十日復科 今上元年>. “敎曰 己卯薦舉科 殿前試取 名議甚重 而群小欲據宿怨 指爲不公而罷之 奸情難掩 公論自激 仁廟末 命特復其科 乙巳奸臣媚嫉善人 又建邪議而革罷 士林久懷憤惋 今削奪南袞官爵 以正其凶惡害善之罪 是非已定 此科猶且未復 極爲未安 復科事下吏曹.”

은 타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 객관성의 문제를 늘 가지고 있었다. 현량과 시행의 논의 과정에서 신용개가 우려했던 것처럼 추천자의 私情이 개입될 수가 있고, 추천자가 올곧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인물이 천거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천거할 때 천거하는 사람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게 하였고, 또 피천거자의 인품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방목의 핵심은 역시 합격자 명단이다. 방목의 합격자 수록 방식은 일반적으로 합격자의 職役, 姓名(字와 生年 포함), 본관,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그 아래로 아버지의 직역과 성명,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관계를 기재하였다. 부모와 조부모가 살아계시면 重侍下, 부모 모두 살아계시면 具慶下,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嚴侍下, 어머니만 살아계시면 慈侍下, 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으면 永感下라 기록하였다. 형제관계는 雁行이라 하는데,兄과 弟를 구분하여 이름만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천과방목」에는 갑과 1인, 을과 1인, 병과 26인 순으로 총 28명의 급제자를 기록하였는데, 합격자의 개인 항목에는 직역, 성명(字, 生年 포함), 본관, 거주지를 기록하고, 그 아래로 아버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문과방목의 기록방식과 동일하지만, 이후부터는 차이를 보인다. 부모, 조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관계에 대한 기록은 없고, 대신 薦目, 歷官, 子孫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갑과 1등으로 합격한 김식의 방목과 다른 문과방목의 기술방식을 비교하면, 김식의 방목에는 천목, 역관, 자손 항목이 추가되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천과방목」과 「문과방목」의 기록방식 비교

문과방목(16세기)				천과방목(1639)			
具慶下 부모생존여부	父職役名	職役名字 本貫居住地	子孫 자손기록	薦目 천거사유	父職役名	職役名字 本貫居住地	掌令金堤老泉 父成均館生員叔弼 本清風 居京 世德聖學才淵湖 訥聖至聖有所無 漢成均館大司成 侯慈榮奉贈領議政 堉陽令孫政 子禮子德秀 純左通判 學問淵源 性穎正史 學問有餘 才冠無雙 異刑博學 文辭優美 氣度剛正 學行兵士 工

4.1 薦目

천목에는 吏·戶·禮·兵·刑·工의 六曹 중 禮曹를 제외한 5曹와 中樞院, 弘文館, 四館(成均館, 校書館, 承文院, 藝文館) 그리고 지방에서 추천받은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이병휴가 급제자의 性分을 분석하여 소개한 바 있다. 1등을 차지한 김식의 천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김식은 학문에 연원이 있고 지조가 곧으며[吏], 학문에 남음이 있고 실천이 독실하다[戶]. 성품은 총명하고 學行이 있으며[兵], 學術에 淵源이 있고 지조가 뛰어나다[刑]. 널리 배우고 순수한 식견과 넉넉한 才器를 가졌으며[工], 才器를 겸비하였고[中樞院], 學行이 있고[弘文館], 氣度가 剛正하고 선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하며 세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으로 얻은 바가 있다[四館].”³⁴⁾

김식을 비롯한 합격자 28명의 천목에는 이와 같이 이, 호, 병, 형, 공, 중추원, 홍문관, 사관 등 8개의 관서와 지방에서 추천될 때의 사유 즉, 행실과 학문, 재능 등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다. 천목에서 육조 중 예조가 빠진 것은 예조는 천거된 인물들을 수합하는 관서로서 직접적으로 천거를 하지 않았던 탓으로 보인다.

천목에 등장하는 관서의 주요업무를 보면, 이조는 인사, 호조는 경제, 병조는 군사, 형조는 법과 치안, 공조는 토목을 관장하였고, 중추원은 왕명의 출납과 兵器, 軍政, 宿衛 등의 일을 하였으며,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 사적과 문서의 관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 예문관 등 4개의 관서로 교육과 문예를 담당하였다. 모두 중앙의 핵심 부서들이어서, 이에서 천거되어 등용된 인물들을 重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에서 추천된 인물에 대하여는 ‘鄉舉’라는 표현을 썼다. 향거는 중국 한나라 때의 관료등용 방법인 ‘鄉舉里選制’에서 따온 말로, 지방관이나 지방의 유력자가 관내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형식이다.

기존의 현량과에 대한 연구는 방목의 원문이 아닌 『연려실기술』이나 『국조방목』 등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이 문헌들의 기록은 『천과방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려실기술』의 김식 천목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 『천과방목』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氣도가 剛正하고, 성품이 총명하며, 선을 즐기고 옛것을 좋아하며, 세속을 벗어나서 스스로 분발하여 널리 배웠고, 순수한 식견과 재주와 器局을 겸비하고 지조가 바르며 학문이 뛰어나 淵源이 깊고 실천에 독실하다.³⁵⁾

34) 『薦科榜目』, <薦目>. “學問淵源操履修正吏 學問有餘踐履篤實戶 性聰穎有學行兵 學術淵源志操卓異刑 博學醇識兼優才器工 才器兼備中樞 學行弘文 氣度剛正樂善好古脫俗自奮學有所得四館.”

35) 이궁익, 『燃藜室記述』 권8 <賢良科破科復科>. “氣度正 性又聰悟 樂善好古 脫俗自奮博學 醇識才器兼備 志操修正卓異 學問淵源有餘 踐履篤實.”

이병휴는 이 천목을 분석하여 평가기준을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 또는 행적, 지조, 생활 태도와 현실대응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³⁶⁾ 이병휴의 현량과 연구에서는 합격자 28명의 천목 내용을 7개의 評價要目으로 구분하고, 인물별로 이 중 몇 가지 요목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요목을 바탕으로 급제자 28명을 천거한 관서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4> 급제자별 천거주체

등수	성명	吏	戶	兵	刑	工	中樞	弘文	四館	鄉舉	計
1	金湜	○	○	○	○	○	○	○	○		8
2	趙佑	○	○			○		○	○		5
3	李延慶	○	○		○	○	○	○	○	○	8
4	安處謹	○				○			○	○	4
5	金明胤	○		○		○	○		○		5
6	安珽	○				○					2
7	安處謙								成均		1
8	權碩	○	○		○	○	○	○	○		7
9	申潛	○		○		○	○		○		5
10	鄭浣	○	○	○	○	○	○	○	○		8
11	閔懷賢	○				○	○	○			4
12	安處誠	○		○		○		○	○		5
13	朴薰	○	○	○	○	○	○	○	○		8
14	金鈺	○			○	○	○	○	○		6
15	申遵美	○					○				2
16	金神童	○			○	○					3
17	姜灝	○		○							2
18	房貴溫	○			○				○		3
19	柳貞								成均		1
20	朴公達								○	○	2
21	李阜	○				○		○			3
22	金大有	○				○		○	○	○	5
23	都衡					○				○	2
24	宋好智	○		○	○	○		○	○		6
25	閔世貞					○					1
26	金顥	○				○					2
27	慶世仁	○				○	○	○	○		5
28	李翎				○	○					2
計		22	6	8	10	22	11	13	18	5	115

36) 이병휴, 「賢良科 及第者の 性分,」 『대구사학』 13권(1997), 216-220.

급제자 28명은 동시에 여러 관서에서 추천을 받았다. 추천의 주체는 중앙의 8개관서와 지방으로 총 9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등을 차지한 김식과 정완, 박훈은 지방을 제외한 중앙의 8개관서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 李延慶과 權礪은 중앙의 7개 관서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특히 이연경은 병조의 추천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방의 추천을 받았다. 중앙의 6개 관서에서 추천한 인물은 金鉞과 宋好智 2명이며, 5개 관서에서 추천한 인물은 趙佑 金明胤, 申潛, 安處誠, 慶世仁 5명이다.

합격자 28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관서는 이조와 공조로 22명이 추천을 받았다. 호조가 추천한 인물은 불과 6명이 합격하여 중앙관서 중 가장 적은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지방에서 추천된 인물 중 합격자는 다섯 명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합격자의 추천관서 분포를 보면 천거가 중앙관서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또 합격자 대부분이 서울 출신이었던 것은 현량과가 지방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4>에서 보면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식의 경우는 8개관서의 추천을 받고 또 1등을 차지하였으나, 정완과 박훈은 각각 10등과 13등을 차지하였다. 반면 다섯 관서에서 추천을 받은 趙佑는 2등을 차지하였고, 중앙 관서의 추천을 하나밖에 받지 못한 安處謙은 7등을 하였다. 이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장원을 차지한 김식은 성품과 학식, 재능을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歷官과 子孫

‘歷官’ 항목에는 합격자가 소과에 합격한 때와 생전에 역임한 관직을 기록하였다. 김식의 역관을 보면,

“신유년(1501)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을해년(1515)에 성균관의 천거로 主簿가 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掌令이 되었다가, 특별히 直提學, 副提學에 제수되었으며, 관직은 成均館大司成에 이르렀다.”³⁷⁾

라고 하였다. 김식의 역관은 현량과 급제 전에 역임하였던 관직으로 주부와 장령만 기록하였고, 현량과 이후에는 홍문관 직제학과 부제학, 그리고 최고 관직이었던 성균관 대사성을 기록하였다. 김식이 1501년 진사시에 입격한 이후 역임한 관직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1515년 6월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로 廣興倉 主簿에 임명되어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이후 형조좌랑,³⁸⁾ 호조좌랑,³⁹⁾ 지평,⁴⁰⁾ 장령⁴¹⁾을 역임하였다. 1519년 현량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에는 成均館司成이 되고, 다시 弘文館直提學에 임명되었다가⁴²⁾ 곧 홍문관 부제학으로 승진하였고,⁴³⁾ 다시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다.⁴⁴⁾

37) 『薦科榜目』 <歷官>. “辛酉進士 乙亥以成均館薦拜主簿 累轉掌令 擢授直提學副提學 至成均館大司成.”

38) 『朝鮮王朝實錄』 中宗12年 6月 9日.

39) 『朝鮮王朝實錄』 中宗12年 7月 28日.

40) 『朝鮮王朝實錄』 中宗13年 5月 2日.

41) 『朝鮮王朝實錄』 中宗13年 12月 9日.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주요 관직만 소개하였다. 병과 1인으로 합격한 李延慶의 역관에는 을사(1454)년에 복과된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내용과 號도 함께 기록해 두었다. 현량과는 기묘사화로 파과 되었다가 다시 복과 되었으나 일부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사항도 역관에 기재하여, 기묘사화 이후의 출처를 함께 밝혀두기도 하였다.

‘子孫’ 항목에는 子, 壻, 孫, 外孫의 순으로 이름과 역임한 관직 등을 함께 기록하였다. 김식의 자손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들 德秀는 左通禮로 추증되었고, 德純은 參奉, 德器, 德懋는 참봉을 지냈고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다섯째 아들은) 德成이다. 壻孫 世訥은 虞候를 지냈고, 壻는 濱陽令, 孫 樗는 참봉, 裴는 참봉, □, 外孫 [이하 내용 확인불가]⁴⁵⁾

여기에는 김식의 다섯 아들이 지낸 관직을 비롯하여, 좌통례 및 영의정으로 추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壻孫과 손자, 외손이 역임한 관직이 기록되어 있다.

5. 무과방목

『친과방목』의 현량과의 무과급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18세기 안정복이 지은 『잡동산이』가 유일하다. 여기에는 합격자의 전력과 성명, 아버지 직역과 이름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현량과 무과급제자는 『친과방목』에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방목의 앞부분에는 무과시험 시행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현량과 무과시험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정부와 예조가 현량과 시행을 위한 계목을 마련하였을 때, 병조에서는 무과 초시 시험의 합격기준을 정하기 위한 계목을 마련하였다. 이 계목에 따르면, 시험 장소는 2개소로 나누고, 步射는 木箭 1발과 鐵箭六兩 2발을 30보 물리나서 적중시킨 사람을 선발하고, 騎射는 1차에 4발 이상을 적중시킨 사람을 각 50인 뽑도록 하였다.⁴⁶⁾ 4월 10일 문과시험이 있던 날 왕은 근정전에서 策問題를 제출하고, 또 모화관에 행차하여 초시에 합격한 무사들에 대한 시험을 명하였다. 騎射는 1차에 5발을 적중시킨 사람을 뽑고, 步射는 片箭을 3발 쏘아 1발 이상을 적중시킨 사람을 뽑았다. 시험 결과 前內禁衛

42) 『朝鮮王朝實錄』 中宗14年 4月 28日.

43) 『朝鮮王朝實錄』 中宗14年 5月 16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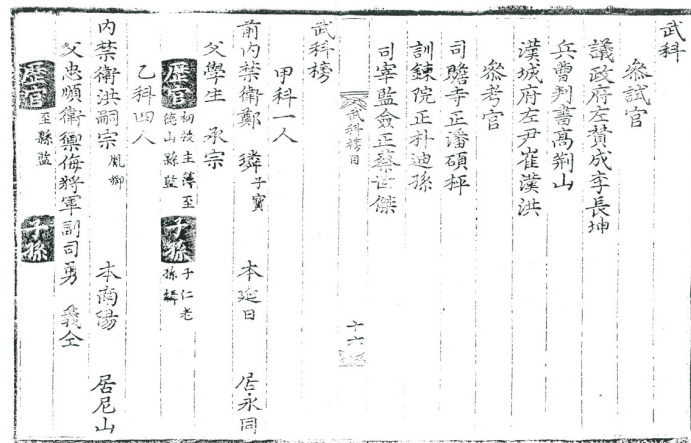
44) 『朝鮮王朝實錄』 中宗14年 5月 27日.

45) 『薦科榜目』 <子孫>. “子德秀贈左通禮 德純參奉 德器 德懋參奉贈領議政 德成 壻孫世訥虞候 壻濱陽令 孫樗參奉 裴判官贈左承旨 權文科參判贈議政 樞槌參奉 □ 外孫孫□ □□李薰.”

46) 『己卯薦科榜目』 <武科初試規矩兵曹啓目>. “命官分二所 步射木箭一矢 鐵箭六兩二矢 退三十步 騎射一次四中以上 各取五十人.”

鄭璘 등 46인이 무과에 합격하였다.⁴⁷⁾ 시험결과 갑과 1인은 전내금위 정린이 차지하였고, 을과는 內禁衛 洪嗣宗 등 4명, 병과에는 전내금위 吳濱 등 41인이 합격하였다. 이날 무과시험의 감독은 參試官으로 議政府左贊成 李長坤, 兵曹判書高荊山, 漢城府左尹 崔漢洪 3명이 맡았고, 參考官으로는 司瞻寺正 潘碩桴, 訓練院正 朴迪孫, 司宰監僉正 蔡世傑 3명이 맡았다.⁴⁸⁾ 4월 20일에 무과합격자에게 홍패와 어사화를 하사하고, 거리 행차는 가뭄으로 못하게 하였다.⁴⁹⁾

무과방목은 연세대 소장본에는 누락되어 있고, 목판은 세 판이 남아 있는데 문과방목 15장의 뒷면에 새겨진 제16장 한 판과 제17~18장, 제23~24장에 해당하는 두 판이다. 때문에 현량과 무과방의 실제 모습은 이 다섯 장 이외에는 현재까지 확인 할 수 없다.



<그림 6> 1639년 「천과방목」 무과방 제16장

무과방에는 薦目은 빠지고 歷官과 子孫만 기록하였고, 그 내용도 문과방에 비해 훨씬 간략하다. 방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23명의 무과시험 합격자 중에서 을과 1등으로 합격한 洪嗣宗을 비롯한 16명에 대해서는 자손을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아 문과방의 상세한 기록과 대조적이다.

1639년 김육의 발문에 따르면 「천과방목」을 간행하여 榜에 있는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였는데, 무과 합격자 자손의 기록이 소략한 것은, 방목 배포의 대상 또한 무과 합격자의 후손은 아니었던 듯하다. 일반적으로 방목은 함께 합격한 사람들이 합격을 기념하기 위해 간행하거나, 후손들이 간행하여 후대로 전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다. 무과방에 ‘자손’ 항목을 두면서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자손이 없었거나 후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방목의 간행이 문과 급제자들

47) 『己卯薦科榜目』 <策問題>.“是日 上幸慕華館 命初試武士 騎射一次五中 步射片箭以三矢 取一矢以上 前內禁衛鄭璘等四十六人 爲武科.”

48) 『己卯薦科榜目』 武科榜目.

49) 『己卯薦科榜目』 <四月二十日唱榜>“賜紅牌及花 以早命停遊街 文科金明胤 武科柳敬宗 行齋會 [弘文錄十八人.”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량과에서 무과시험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문무과는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고 여겨, 무과가 시행된 이후부터 문과와 무과는 한쪽을 시행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함께 실시하였다. 즉 문과의 對擧로서 함께 실시하였고, 방목은 문과방목과 함께 간행하였다. 1519년 현량과는 별시로 진행되었는데, 시행 목적은 문과를 통한 조광조의 사림을 등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무과급제자는 천거를 통한 등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別試와 같은 방법으로 현량과에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현량과를 파과하면서 무과는 罷科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무과가 문과처럼 정치적 목적을 두고 별도로 시행된 것이 아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량과는 1519년 4월 10일에 시행된 문과시험을 의미하며, 무과는 이날 문과시험과 함께 시행된 일반적인 무과시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잡동산이」에 기록된 무과방목 합격자를 참고하여 무과방목으로 현량과 무과합격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현량과 무과시험 합격자 명단(46명)

등수	전력	합격자	본관	거주지	아버지	출 처
1	內禁衛	鄭璘	延日	永同	學生 承宗	천과방목
2	內禁衛	洪嗣宗	南陽	尼山	忠順衛禦侮將軍別司勇 義全	천과방목
3	兼司僕	金允珍	淸風	宣川	將仕郎 箕子殿參奉 有赫	천과방목
4	內禁衛	姜渭	晉州	京	禦侮將軍忠武衛副護軍 以溫	천과방목
5	前內禁衛	李壽億	延安	京	禦侮將軍麟山僉使 承權	천과방목
6	前內禁衛	吳濱	海州	京	禦侮將軍龍驤衛副司直 永昌	천과방목
7	學生	李仁符	廣州	星州	承仕郎 曄	천과방목
8	効力副尉	李世蕢	慶州	東萊	別侍衛秉節校尉 原仁	천과방목
9	展力副尉	金潤瑩	康津	京	通政大夫行穩城府使[]	천과방목
10	阿山萬戶	金義亨	淳昌	京	禦侮將軍龍驤衛左部將 孝文	천과방목
11	定虜衛	韓鐵壽	淸松	義州	別侍衛奮順副尉 碩仁	천과방목
12	兼司僕	盧公佐	光州	京	通訓大夫前行熙川郡守 子純	천과방목
13	定虜衛	李之芸	廣州	長興	昭威將軍 仲均	천과방목
14	學生	柳敬宗	文化	京		천과방목
15	內禁	申玻			部將 敬宣	잡동산이
16	內禁	金士孝			部將 永年	잡동산이
17	內禁	李昌貞			縣監 孟禧	잡동산이
18	內禁	李光曾			學生 承正	잡동산이
19	前內禁	朴叔根			學生 亨	잡동산이
20	學生	羅光厚			縣監 敬全	잡동산이
21	忠義	成繼義			夏城君秀才	잡동산이
22	定	吳世勣			迪順 貴洞	잡동산이
23	內禁	柳元昌			監察 自潭	잡동산이
24	兼司僕	李寬			進士 仁碩	잡동산이

등수	전력	합격자	본관	거주지	아버지	출 처
25	兼司僕	金永綏			郡守 秀文	잡동산이
26	內禁	李世昌			生員 時英	잡동산이
27	萬戶	洪萬孫			司直 若[]	잡동산이
28	虞候	金白			生員 孝禎	잡동산이
29	內禁	安自儉			勵節 漢孫	잡동산이
30	前內禁	李壽彭			折衝 烈	잡동산이
31	學生	鄭純祖			僉正 鐘	잡동산이
32	勵力	呂孟濕			郡守 希寧	잡동산이
33	萬戶	李昌亨			縣監 孟禧	잡동산이
34	定虜	宋玉衡			學生 有貞	잡동산이
35	學生	朴壽侄			縣監 龜元	잡동산이
36	學生	金旺禔			司直 潤洱	잡동산이
37	學士	金祖			將士	잡동산이
38	定虜衛	吳系孫	咸陽	光州	學生 彭童	천과방목
39	前內禁衛	李璇	光州	原州	承義副尉 寬弼	천과방목
40	內禁衛	柳萬禎	晉州	丹城	禦侮將軍行丑山萬戶 淵	천과방목
41	內禁衛	柳漑	晉州	京	通訓大夫行司宰監僉正 之淵	천과방목
42	內禁衛	李英童	慶州	京	禦侮將軍行忠[]衛副司直 昱	천과방목
43	學生	李璣	龍仁	高陽	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希幹	천과방목
44	內禁衛	具之信	綾城	竹山	前內禁衛秉節校尉副司勇 致遠	천과방목
45	內禁衛	龍世裕	洪川	洪川	建功將軍全羅左道水軍虞候 孟孫	천과방목
46	阿耳萬戶	涵	玄風	京	通訓大夫行南海縣令 輔商	천과방목

6. 맺음말

현량과는 1519년에 성리학적 유교이상을 꿈꾼 정치개혁가 조광조의 적극적인 건의로 시행이 되었다. 당시 과거가 경서를 암송하는 정도로 평가될 뿐이고, 자기 수양이 되지 않은 인재가 등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덕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현량과의 인재 선발은 성균관, 중추원·육조·한성부·홍문관, 지방의 관찰사가 인재를 예조에 추천하면, 예조는 이를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국왕에 계문하여 국왕의 책문을 통해 28명의 선발하여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500년이 넘게 이어온 기존의 과거제도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인재등용 방식인 현량과는 기성세력의 반대와 우려도 심하였으나 조광조의 끈질긴 설득과 집념으로 결국 시행되었다. 이로써 신진세력들이 정부의 요직에 대량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만 시행 몇 달 만에 수많은 논란이 제기 되어 그해 12월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숙청되고 현량과도 함께 파과되고 말았다. 이후 현량과는 정치적 입장이 바뀔 때 마다 복과와 파과를 반복하다가 선조 1년(1568)에 최종 복과되어 더 이상 파과 되지 않았다.

현량과의 합격자를 기록한 「천과방목」은 조선시대 두 번 간행되었다. 초간은 현량과 병과에 급제 하였던 안처겸의 아들 안로가 1579년에 일을 주관하여, 노수신의 발문을 수록하여 간행한 것인데, 이 판본은 전하고 있지 않다.

재간본은 초간 후 60년이 지난 1639년에 김육이 호서관찰사로 있을 때 청주에서 강수 박훈의 증손이 가지고 있던 사본을 얻어 간행한 것이다. 이때 제작한 목판은 현재 청주에 거주하는 박훈의 후손이 일부 소장하고 있다. 판본은 연세대학교에 문과방 11장과 노수신의 발문 한 장이 한 책으로 묶여 있다. 이 판본의 간행시기는 1639년 제작된 「천과방목」의 판목과 비교해서 판식이 일치하고 있는 점과 목판의 소장처와 소장자를 통해서 추측하면 1639년의 재간본임을 알 수 있다.

「천과방목」의 합격자 수록 방식은 당시의 다른 문과방목과 비교하면, 직역, 성명, 본관, 거주지, 아버지의 직역과 성명을 기록한 부분까지는 동일하지만, 이후 부모와 조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고, 대신 천목과 역관, 자손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것은 덕을 겸비한 인재를 추천을 통해 선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천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고, 현량과 급제에 대한 후손의 자부심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과방의 합격자 천목에는 자신을 천거한 중앙의 8개관서가 기록되어 있다. 8개관서는 예조를 제외한 5조와 중추원, 홍문관, 사관이며, 추천의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의 추천은 ‘鄉舉’로 표기하였다.

무과방목은 목판 세 장이 남아 있는데, 일부이기는 하나 인본이 남아 있지 않아 「천과방목」의 수록 내용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무과방에는 총 46명의 합격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문과방에 비하면 내용은 보다 소략한 편이다. 천목이 없고, 역관과 자손에 대한 기록도 아주 간략하다. 이것은 현량과가 주로 문과 위주로 실시되었고, 무과는 문과의 對舉로 함께 시행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己卯薦科榜目」

「己卯錄續集」

김육. 「潛谷遺稿」

노수신. 「穌齋先生文集」

안정복. 「雜同散異」

이궁익. 「燃藜室記述」

「朝鮮王朝實錄」

- 한국국학진흥원. 『충북지역의 목판자료』. 안동: 성심. 2011.
- 梁允錫. “朝鮮中期 賢良科 研究.”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1996.
- 李秉休. “賢良科 及第者の 性分.” 『대구사학』 13집(1997). 195-222.
- 鄭杜熙. “趙光祖의 復權科程과 賢良科 問題.” 『韓國思想史學』 16집(2001). 35-55.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Jeong-bok. *Jpdongsani*.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Gimyo Cheon-gwa bangmok.

Gimyoloksokjib.

Kim, Yuk. *Jamgokyujib*.

Noh, Su-sin. *Sojaeseonsaengmunjib*.

Yi, Geung-ik. *Yeollyeosilgisul*.

Jeong, Duhui. 2001. “Reinstatement Process of Jo Kwangjo and the Problems in The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16: 35-55.

Korean Studies Institute. 2011. *Woodblock Materials in Chungcheongbuk-do*. Andong: Seongshim.

Lee, Byeonghyu. 1997. “The Affiliations in The Successful Applicants of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History of Daegu*, 13: 195-222.

Yang, Yunseok. 1996.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System for the Recrui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mid-Joseon Period*. Master's Thesis. Gwandong University.

